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47
----------	------

제출연월일 : 2026. 3 .

제출자 : 하남시장

1. 위탁사무명: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하남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위탁계획), 7조(의회 동의 등) 및 제9조(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 추진 필요성

- 하남시니어클럽 위·수탁 협약기간 2026. 8. 8. 만료 예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기관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필요.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개발·보급 및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 그 밖에 하남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민간위탁 개요

구 분	하남시니어클럽
소재지	하남시 신장로 20번길 27, 서해상가 4층
규모	연면적 246m ² (74.5평)
정원	9명 (관장 포함)
노인일자리 참여자	909명 (2026년 기준) ※ 2026년 하남시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자 2,353명

5. 민간위탁 기간: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 2026. 8. 9. ~ 2031. 8. 8.

6.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방식: 공개모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하남시 사무위탁조례 제8조의2(선정방법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침
- 위원구성: 하남시 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선정 기준: 1차 서면심사 점수와 2차 발표심사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정
 - 1, 2차 합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절차 재이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액	산출근거
계	583,400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583,400	인건비 495,599
		운영비 87,401

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참여노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 유지가 필요한 사무로 판단됨
-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 활성화 등 사업 효과 극대화 기대

9. 성과평가 실시

- 하남시 사무위탁조례 제21조(성과평가)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식: 「하남시니어클럽 성과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 내부평가 위원 1명, 외부평가 위원 2명
 - 심의일자: 2026. 2. 23.(월)
 - 평가결과: 80점
- ※ 하남시 사무위탁 관리지침 상 위탁제한 기준 70점 미만의 경우 민간위탁 제한 가능

10. 향후 추진 일정

- 하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공고 2026년 6월
-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6년 7월
- 위·수탁 관리협약체결 2026년 8월

- 붙임 1. 경기도 내 시니어클럽 위탁 현황 1부.
 2. 관계 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 1

경기도 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현황

연번	시군구명	기관명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관·단체	비고
계			28개소	
1	하남시	하남시니어클럽	사단법인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2	고양시	고양시니어클럽	대한사회복지회	
3	광명시	광명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	
4	구리시	구리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5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	비영리단체 사랑나눔회	
6	김포시	김포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7	남양주시	남양주시니어클럽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8	부천시	부천시니어클럽	재단법인 부천기독교청년회	
9	성남시	성남시니어클럽	재단법인 순복음선교연합	
10	성남시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사단법인 기아대책	
11	수원시	수원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12	시흥시	시흥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13	안산시	안산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14	안성시	안성맞춤시니어클럽	안성시 새마을회	
15	안양시	안양시니어클럽	재단법인 안양불교원	
16	오산시	오산시니어클럽	사단법인 힘찬동네	
17	용인시	용인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18	의왕시	의왕시니어클럽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19	의정부시	의정부시니어클럽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	이천시	이천시니어클럽	사단법인 성민원	
21	파주시	파주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동행연우회	
22	평택시	평택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23	포천시	포천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24	화성시	화성시니어클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복지재단	
25	양주시	양주시니어클럽	사단법인 한국복지경영진흥원	
26	광주시	광주시니어클럽	사단법인 한국복지경영진흥원	
27	양평시	양평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	
28	여주시	여주시니어클럽	재단법인 구세군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5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등)

-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 ①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신설 2021.1.12.>, <개정 2023.5.1.>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